

농산물우수관리의 안전성 기준

1. 「농산물우수관리기준」에 따른 토양중금속, 수질, 농산물의 농약·중금속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가. 토양 중금속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 고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1) 니켈(Ni)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

2) 6가 크롬(Cr6+)의 경우 총크롬(Cr)의 분석값을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총크롬의 분석값이 6가 크롬(Cr6+)의 기준 이상인 경우 6가 크롬(Cr6+)을 재분석하여야 한다.

나. 수질 기준

1) 하천 및 호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의 하천, 호소의 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질소, 인 성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

2)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2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 4의 농·어업용수 기준을 적용한다. 이때, 질소, 인 성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

3)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.

4) 농업용수를 수돗물로 이용하는 경우와 자연 강우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수질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.

다.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

1)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: 출하 전 10일(시료 접수일 기준)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 및 「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2조에 따른다.

2) 출하·유통·판매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: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.

라.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: 식품위생법 제7조 관련(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) 제2장 「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」 제5항에 따른 중금속 기준을 적용한다.